

광주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16688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L (변경 전 명칭 : A종교단체 C교회)

변 론 종결 2017. 6. 2.

판결 선고 2017. 6. 23.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1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3. 6. 25. 접수 제6632호 및 제663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1. 접수 E로 마친 변경등록을 말소하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107.1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가.항에 아래의 3)항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3) 한편 H는 2013. 6. 19. 피고의 목사로 발령받아 시무를 하였고, 이후에 M이 2016. 3. 7. 피고의 목사로 발령받아 현재 피고의 대표자로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현재 피고 교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L'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 마쳐진 피고 명의의 자동차명의인변경등록은 전부 위조되거나 무효인 등기 · 등록 원인서류를 첨부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 또는 등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변경등기및 변경등록을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교단 탈퇴가 있기 전의 피고인 종전 피고(이하 '피고'와 '종전 피고'를구별하여 사용한다)의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G라는 교단에서 탈퇴하였고, 이사건 교단 탈퇴에 동의하였던 교인들이 피고의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으므로, 종전피고의 실체는 원고로서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게 되는데도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반대하였던 잔존 교인들로 구성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본안전항변)

1) 원고는 종전 피고로부터 별개의 실체를 갖춰 독립하게 설립된 교회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피고와 구별됨이 없이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내지 조직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 내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교인총회 없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지 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 사건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위의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그리고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반대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그 교회 구성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교단 탈퇴가 종전 피고의 교단 탈퇴·변경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본다.

을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피고의 정관에서는 "본 교회 정관을 수정 및 개정코자 할 시에는 당회의 연구와 의결을 거쳐서 정기총회의 3분의 ②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제2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재직회원은 중생의 체험자로서 성경과 믿음에 상당한 식견을 갖춘 자로서 타 교인의 모범이 되고 기혼자이어야 하고 반드시 안수 집사라야 한다(제1항). 재직회의 회장은 담임 목사로 한다(제2항). 재직회는 교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되 기간은 매년 12월 첫 주에서 셋째 주일까지이다(제4항). 재직회의 구성은 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0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단 탈퇴는 종전 피고의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재직회의'만으로는 이러한 교단 탈퇴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15, 16, 21, 22호증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교단 탈퇴 당시 종전 피고가 G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G 교단 탈퇴 및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이 사건 교단 탈퇴에 관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단 탈퇴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교단 탈퇴 내지 변경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전피고의 동일성은 여전히 G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존속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를 탈퇴하고 새로운교회로서 원고를 성립하게 하였는지 본다.

갑 제6, 7, 15, 16호증에 각 적힌 내용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하였던 교인들이 종전 피고(A종교단체 C교회)와는 다른 명칭으로서 원고(A종교단체 B교회)를 사용하여 교회의 이름을 불렀던 사실, ② 위 교인들은 D를 원고의 대표자로서추대하여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하지 않은 교인들과 별도로 예배활동 및 신앙생활을 영위한 사실, ③ D 및 위 교인들은 2013. 6. 19. 피고와 별도로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원고를 설립하고자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10, 12,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8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피고와 별개로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하고 있다.

①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에 찬성한 종전 피고의 교인들은 G의 교리나 예배방법을 반대하였다기보다는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전 피고가 소속된 교단인 G에 납부하여 왔던 헌금 액수의 적정성 및 위 교단의 이사인 K 목사의 개인 비위에 대한 논쟁이 발단이 되어 종전 피고 교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위 교단과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이르게 되었다.

② 비록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서면에는(갑제4호증 및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1)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동의하였던 종전 피고의 교인들이 G를 탈퇴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종전 피고로부터 탈퇴하겠다고거나 종전피고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교인들이 종전 피고에서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탈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기보다는 종전 피고가 소속된 G에서 탈퇴하고 종전 피고의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교단 탈퇴 동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은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 이후에도 종전피고가 예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예배활동을 하였고, G가 D을 제명하고 H를 피고의 새로운 목사로 임명하자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다. 우리는 G를 탈퇴했다. 이 교회는 당신들 교회가 아니다."는 등의 큰소리를 지르면서 H가 위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던 점(을 제10호증의 1)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하였던 교인들이 종전 피고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역시 2016.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교회는 교회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물적·인적구성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6. 11. 11.자 준비서면에서 "종전 피고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동의한 교인들의 교리나 예배방법이 이 사건 교단 탈퇴전후로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교인들 및 원고의 대표자로 추대되었던 D은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회의 명칭만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3. 6. 19. 제정된 원고의 정관(갑 제7호증)은 종전 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과 비교해 보면, 그 형식 및 체계, 주요 내용이 대부분 같거나 비슷하고 적어도 원고의 위 정관에서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반대하였던교인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나52974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에서 탈퇴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상고기각(대법원2016다212135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⑥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종전피고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고로서의 명칭 변경도 모두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피고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동일성이 있는 피고에 소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가적으로) 원고가 적법한 교인총회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쳐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기하는 소송에서 사원총회를 거쳤는지 여부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기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갑 제7호증에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4조에서는 "당회원은 목사나 장로로 구성된다(제1항). 당회장은 담임 목사로 한다(제2항). 당회는 모든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하며 교회의 유사시 당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심으로서 이 법원에서의 변론이 2017. 6. 2.종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15, 16, 21, 22호증에 각 적힌 내용만으로는 교회 재산에 대한 관리 내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가 2017. 6. 2. 이전에 원고의 당회결의 또는 교인총회를 거쳐 제기되었다거나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기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 작은 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소송요건을 흠결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성주, 판사 양영희 사법연구를 명받아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별지 1

목 목

1. 전남 강진군 담 3312㎡
2. 전남 강진군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 1층 309.75㎡ 종교집회장
 - 2층 273.49㎡ 종교집회장
 - 3층 51.59㎡ 종교집회장
 - 부속건물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45㎡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0㎡ 끝.

별지 2

목 록

등록번호

차 명 그랜드 스타렉스

형식 및 연식 TQBJBB 2012

차 대 번호

원동기형식 D4CB

사용본거지 전라남도 강진군

등록연월일 2012. 6. 5. 끝.

별지 3

도면

